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0일, 유용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3.9.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 의원)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군인에게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이나 돌보기 위한 휴직을 허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확대 지원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군무원 모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입법적 균형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임.

현행법의 경우 가사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사휴직 총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아니면 가사휴직 사유별로 1년 이내인지 규정 해석상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는 바,

가사휴직 사유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하던 것을 돌봄이나 부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가사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군인이 휴직할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